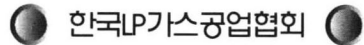


LPG용기 재검사 현황 및 문제점



우리 협회는 용기재검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검기간을 연장해줄것을 건의했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1. 현 황

○LPG용기재검사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2

○검사주기

- 용기충전사업자는 500ℓ 미만 LPG용기를 재검사받아야 함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내용적이 50ℓ 미만(20kg)인 LPG용기의 최초 재검사는 4년임

○연도별 재검사 현황

- LPG용기는 전국 34개 전문검사기관에 의해 검사되고 있으며, 매년 약 4백만개 정도가 재검사를 받고 있음

구 분	'01	'02	'03	'04
재검사숫자(개)	4,140,082	4,087,792	3,862,542	3,903,640

※법령상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임받았음

○LPG 유통용기 현황 (04년말 기준, 단위: 천개)

13kg미만	13kg	20kg(자동차용 포함)	50kg	계
163	1,154	12,432	855	14,604

2. 현행 검사의 문제점

현행법상 LPG용기재검사 기간 조항은 30년전인 지난 73년 제정된 것으로, 용기 제조기술 향상 등에 비취볼 때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으며, 잦은 재검사로 인한 내구성저하, 업계의 비용부담 가중,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있음

가. 잦은 재검사로 인한 용기의 내구성 저하

한국LPG가스공업협회가 전국 160여 용기충전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5년 이상된 용기가 전체의 약 6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잦은 재검사로 인해 용기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나. 업계의 비용부담 가중

○최근 용기재검사기관들이 KOLAS인증을 받으면서 인력과 장비추가 비용 등을 가격에 반영한데 이어, 용기팽창시험 의무화에 따른 재검비용 인상 등으로 용기충전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다. 밸브의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특히 LPG용기에 부착돼 있는 밸브의 경우 사용연한이 없어, 재검사시마다 폐기되고 있으므로 자원낭비라는 지적임

- 매년 폐기되는 밸브비용은 약 120억원정도 됨

3. 용기재검사 연장 필요성

가. 용기제조기준 강화와 기술개발 등으로 용기품질 향상

○제조공정의 자동화 및 용기제조방식이 3P(세개의 철판 용접)에서 2P(두개의 철판 용접)로 바뀜에 따라 용접부위가 감소되어 불량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됨

○스커트(용기 맨 아랫부분) 두께를 몸통보다 두껍게 하여 스커트의 찌그러짐을 감소 시킴

나. 용기재검사기준 강화와 체적거래제 확산으로 내구성 향상

○용기재검사기관들이 KOLAS인증을 받음에 따라 검사인력 추가, 장비 보완 등 재검사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용기의 안전성이 높아짐

○체적거래제 확산으로 소요용기가 많아진 (twin용기) 반면 용기교환 횟수가 줄어들어 용기내구성은 향상됨

다. 용기관리 상태 양호

○용기운반차량 리프트 설치, 손수레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기관리 상태가 과거에 비해 매우 양호함

○또한 기술향상으로 용기철판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용기의 무게도 가벼워져 취급이 용이함

4. 개선방안

○용기의 제조기술 향상, 일본과의 사례 등을 볼 때 LPG용기의 재검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현행		➔	○개선안	
구분	500 / 미만		구분	500 / 미만
15년 미만	3년마다		15년 미만	4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3년마다
20년 이상	1년마다		20년 이상	2년마다

※ 일본사례

- 일본의 경우 98.4 법개정(용기보안규칙)으로 재검사기간을 연장하였음

종 전	현 행 ('98. 40이후)
경과년수 8년미만 용기는 4년 8~20년 3년 20년이상 1년	경과년수 20년미만 용기는 5년 20년이상 2년